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한국의 어업분쟁 조정 사례

Cases of fisheries dispute arbitration in Korea



2018. 9. 12

박준모

Joon Mo Park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INDEX



I. 어업분쟁의 개요



II. 한국의 어업분쟁 조정제도



III. 서남구기선저인망과 양포 근해
문어통발 간 조업구역 분쟁 사례



IV. 남해 연안통발과 연안자망 간
조업구역 분쟁 사례



I. 어업분쟁의 개요



I - 1. 어업분쟁의 원인





I-2. 어업분쟁의 유형

조업구역 분쟁

- 어업분쟁의 대부분
- 근해와 근해, 근해와 연안, 연안과 연안 업종 간 분쟁
- 어구손실 피해발생으로 분쟁조정 신청

시기별 분쟁

- 특정어종 성어기 조업시 조업구역 분쟁
ex) 오징어 조업시기 근해채낚기-연안채낚기
대구 조업시기 호망-자망 간 분쟁 등

제도개선 관련 분쟁

- 수산관계법령 등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에 대한 개정
건의
ex) 근해채낚기 광력 조정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분쟁 등



Ⅱ. 한국의 어업분쟁 조정제도



Ⅱ-1 어업조정제도의 개요

목적

- 어업분쟁조정 운영절차 및 방법
- 어업조정위원회 기능 및 역할
-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어업분쟁 해결

근거

[수산업법]

- 제88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90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법령

[수산업법시행령]

- 제74조의2(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조정 효력

-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 가능
-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인에 한정



II-2.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 2009.10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설치
- 2009.11 서해어업조정위원회 설치
- 2018.01 남해어업조정위원회 설치

구성

[총 22명 이내로 구성]

-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각 1인
- 관계 시도 수산업무공무원 6인 이내
- 민간위원 13인 이내

기능

- 어구·어업의 갈등 및 분쟁의 조정
- 어업간 조업구역·기간 및 기타 어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어업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건의 등

분과위원회

- 분쟁조정 대상별로 설치
- 해수부, 수과원 등 공무원 4인 이내
- 수협장, 업계대표, 학계, 연구기관, 법조인 등 4인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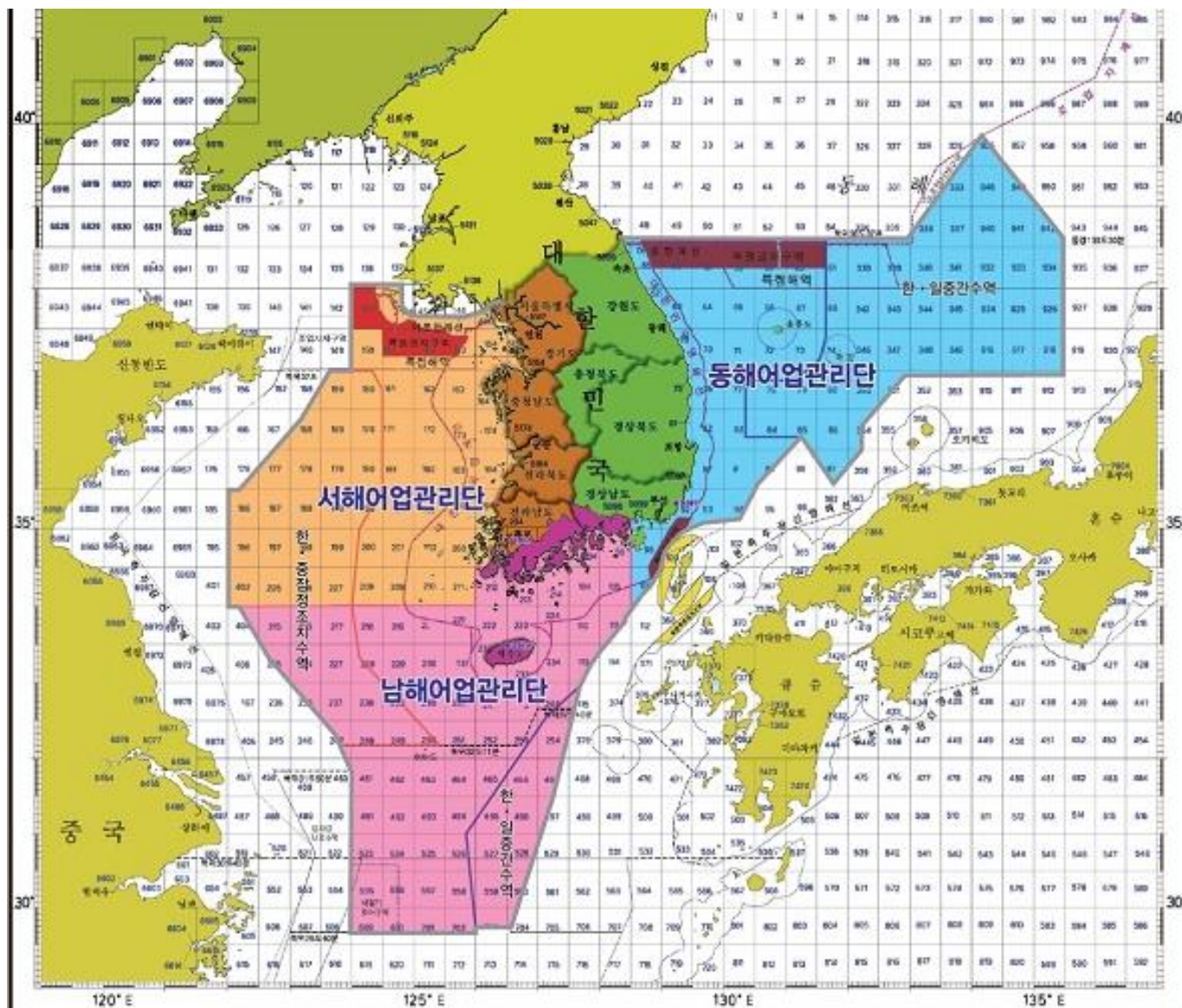


II-3. 어업분쟁조정 절차





II-4. 어업관리단의 관할수역





Ⅲ. 서남구기선저인망과 양포근해문어통발 간 조업구역 분쟁 사례





Ⅲ-1. 어업분쟁 이해당사자와 쟁점



서남구기선저인망

(21척)

VS



양포근해문어통발
협회

(10척)

[쟁점]

- 매년 6월~8월동안 93,94해구에서 무분별하게 저질을 끄는 서남구저인망 어선들로 인해 통발 어구손실이 심각하고 수산자원 고갈 우려



Ⅲ-2. 어업분쟁 수역



분쟁해역



Ⅲ-3. 어업분쟁조정활동 내용

조정
기간

2016.1.22 ~ 2017.12.28 (약 2년)

분과
위원회
구성

- 분과위원 4인
- 어업인대표 6인
(양포근해문어통발협회, 서남구저인망협회, 수협 등 각 2인)

조정
활동

- 어업인간담회 11회
- 어업분쟁위원회 본회의 4회

조정
결과

어업인 상생협약 체결



Ⅲ-4. 어업인 상생협약 체결

협약당사자

서남구저인망협회, 양포통발협회

협약 해역

93,94해구 일원

협약기간

연중

주요 내용

1. 조업시 어구손실 방지에 최선
2. 조업 가능한 구역시 없을 시 양포통발협회와 사전 협의
3. 양포통발협회 회원들은 가능한 한 저인망어선 인근 조업 회피
4. 어선의 위치확인을 위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시 작동
5. 공동 교신주파수(SSB) 사용
 - 경도 130도 내측 : 27메가 4번
 - 경도 130도 외측 : 27메가 5번

자율협의회 구성

1. 양 단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자율협의회 구성
2. 회장과 간사는 2년씩 순번제
3. 연 2회 회의 개최로 협약사항 이행 점검
4. 필요시 양측 합의하에 협약 내용 수정 가능



IV. 남해 연안통발과 연안자망 간 조업구역 분쟁 사례





IV-1. 어업분쟁 이해당사자와 쟁점



남해연안통발
자율관리공동체

(73척)

VS



남해연근해유자망
협회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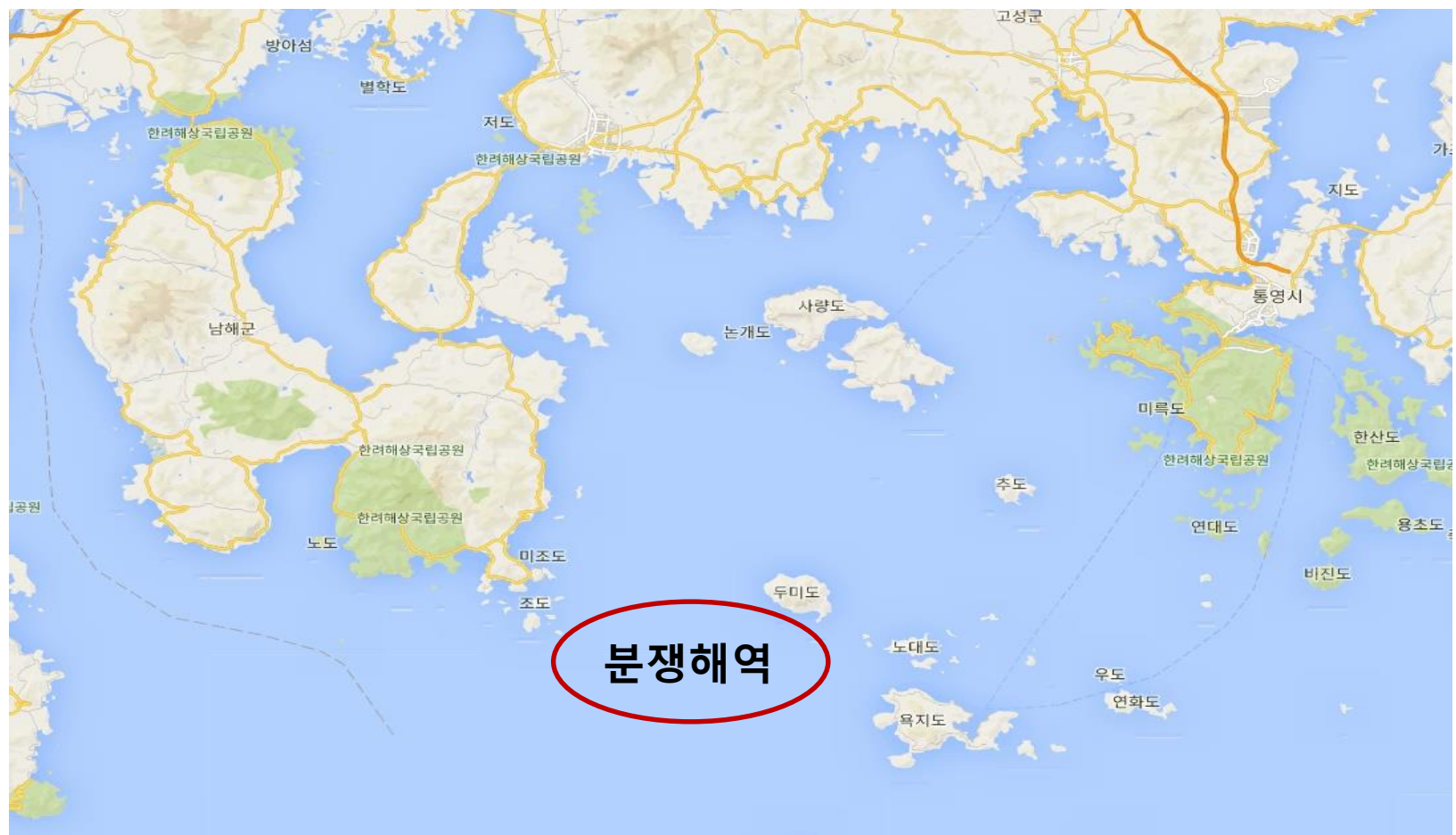
(87척)

[쟁점]

- 매년 11월~다음해 1월까지 남해군 남동방 해역에서 연안통발과 연근해유자망이 물메기를 두고 경쟁조업을 함으로써 어구 손상 등 분쟁 발생



IV-2. 어업분쟁 수역





IV-3. 어업분쟁조정활동 내용

조정
기간

2014.12.2 ~ 2017.9.15 (약 2년 9개월)

분과
위원회
구성

- 분과위원 4인
- 어업인대표 6인
(통발자율관리공동체, 남해자망자율관리공동체,
삼천포자망협회, 연근해유자망자율관리공동체 등)

조정
활동

- 어업인간담회 7회
- 어업분쟁위원회 본회의 5회

조정
결과

어업인 상생협력 협약서 체결



IV-4. 어업인 상생협약 체결

협약당사자

남해연안통발자울공동체
남해유자망자울공동체, 삼천포연안자망협회, 남해동부자망자울공동체

협약 해역

9남해군 남동방 해역 일원

협약기간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주요 내용

1. 통발어업인은 협약 해역 중 합의한 일부 해역에는 통발어구 부설 금지
2. 연안통발 어업인은 합의한 구역에서 25초 간격으로 통발 부설
3. 연안자망 어업인은 자망 어구 설치 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만 부설하는 것을 원칙
4. 현장조율을 위한 통신주파수 설정 : **SSB2183.4Khz**

자울협의회 구성

1. 양 단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자울협의회 구성
2. 회장과 간사는 2년씩 순번제
3. 연 2회 회의 개최로 협약사항 이행 점검
4. 필요시 양측 합의하에 협약 내용 수정 가능



V. 결론 및 향후 과제



V-1. 어업조정제도 요약

목적

-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어업분쟁 해결

법적근거

- 수산업법 제88조, 제90조
- 수산업법시행령 제74조의 2

운영기구

- 어업조정위원회

효력

-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한정

성격

- 분쟁 당사자에 의한 자발적 합의



V-2. 향후 과제

1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강제력 확보

2

협약 내용의 제도화

3

조정위원의 전문성 확보

4

해역별, 어종별 조정기준 마련



THANK YOU

jmp1970@naver.com

<http://blog.naver.com/andrewpark1970>